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김문수 · 백혜련
김정호 · 서영석 · 장종태
이개호 · 김남희 · 정태호
서미화 · 민병덕 · 송옥주
김 윤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,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 의료 공급 부족,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·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.

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,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·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, 지역·필수·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

능한 의료서비스 공급·이용체계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47조의3·제49조의2 등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”를 “제45조제3항, 제46조 및 제47조의3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

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7조의3(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등) 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,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의 육성 등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·분야별·요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·지급 등)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치료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한다.

1. 지역·필수·공공의료의 기반 유지
2. 요양기관 간 협력
3. 그 밖에 의료서비스 공급·이용체계의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
② 공공정책급여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(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한다.

③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의 대표(협력조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를, 협력조직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협력조직을 대표하는 요양기관의 대표를 말한다)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④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이 공단에 청구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.

⑤ 공공정책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 등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·청구·심사·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 중 “요양급여”를 “요양급여 및 공공정책급여”로 한다.

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8조제1항제1호 중 “요양급여비용을”을 “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”로 한다.

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요양급여비용을”을 “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요양급여비용 총액”을 “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 총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)	제4조(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)
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 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 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</u> <u>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</u> <u>항</u>	3. <u>제45조제3항, 제46조 및 제4</u> <u>7조의3에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3의2. <u>제49조의2제5항에 따른</u> <u>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</u> <u>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u>제47조의3(요양급여비용의 차등</u> <u>지급)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</u> <u>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</u> <u>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</u> <u>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</u> <u>있다.</u>	<u>제47조의3(요양급여비용의 차등</u> <u>지급 등) ① 지역별 의료자원의</u> <u>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</u> <u>해소,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</u> <u>야의 육성 등 의료체계의 개선</u> <u>을 위하여 지역별·분야별·요</u> <u>양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</u> <u>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건강 회복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2(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·지급 등)

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치료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한다.

1. 지역·필수·공공의료의 기반 유지

2. 요양기관 간 협력

3. 그 밖에 의료서비스 공급·이용체계의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
② 공공정책급여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(제1항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 간 협력

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한다.

③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의 대표(협력조직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를, 협력조직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협력조직을 대표하는 요양기관의 대표를 말한다)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④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간 협력조직이 공단에 청구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.

⑤ 공공정책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 등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산정·청구·심사·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부가급여) 공단은 이 법에

제50조(부가급여) -----

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·출산 진료비, 장제비, 상병수당,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~ ④ (생략)

제98조(업무정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.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·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

--- 요양급여 및 공공정책급여

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
제98조(업무정지) ① -----

1. -----

----- 요양급여비용

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
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
2. 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
공정책급여 총액 -----

② ~ ⑤ (생 략)	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